

教授人力 需要推定의 接近方法

金 信 福*

〈차

례〉

I. 序 : 研究의 目的 · 方法	의妥當性
II. 理論的 背景	1. 教授確保狀況
1. 教授의 役割과 責任	2. 教授의 勤務負擔
2. 教授需要의 概念과 關聯要 因	3. 現行基準의 妥當性
3. 教授 勤務負擔에 關한 理論 과 研究	IV. 教授需要推定을 위한 模型
4. 教授需要 算出의 接近方法	1. 基本前提
III. 教授人力의 實態 및 定員基準	2. 接近方法斗 變數選定
	3. 算出模型斗 定員基準
	V. 結 語

〈요 약〉

〈우수한 資質을 갖춘 適正數의 教授人力을 확보하고 勤務負擔의 適正化를 期하는 일은 대학운영의 效率性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質을 높이고 나아가서 研究와 社會奉仕의 기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要件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一般產業部門의 人力需給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에 대학교수를 비롯한 專門職의 人力需給에 관해서는 연구가 未治하였으며 現行 教授定員基準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약하다.

教授의 人力管理에 있어 最優先의 으로 張악해야 할 事項은 教授需要이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學生數, 遂行해야 할 業務의 絶對規模, 大學管理方式, 大學 혹은 政府의 財政形態를 들 수 있다. 教授需要算出의 接近方法에는 教授 對 學生比를 기준으로 하는 概括的 산출방식, 適當 開設되는 總授業時間을 기준으로 하는 教育課程運營基準 방식, 教授들의 職務를 분석하여 教授需要를 推定하는 職務分析方式이 있다.

우리나라 四年制 大學들의 教授要員 確保狀況과 教授의 勤務負擔 等 實態分析 및 現行基準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의 검토를 통하여 教授定員基準 改善의 基本方向으로서, 教育課程을 기준으로 複合의 인 要因을 고려하고 系列別로 教授需要를 推定하며 大學院 教育 負擔을 반영하는 등의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들 토대로 學生數와 適當受講時間數, 講座規模, 時間講師依存度, 專任教授의 適當 擔當時間을 教授需要 算出의 주요 变수로 選定하였으며 이들을 구체적인 算出模型으로 종합화하였다.〉

* 서울大 行政大學院 教授.

I. 序 : 研究의 目的 · 方法

教育의 質을 높이는 데 가장 核心的인 要件 중에 하나는 適正數의 우수한 教員을 확보하는 일이며 이는 大學教育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教育의 效果性 측면에서 보면 가능한限 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 듯; 大學運營의 能率性을 고려하면 多多益善式으로 교원수를 증가시킬 수만은 없다. 人件費는 대학운영 지출에 있어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이다.

一般產業部門에서 人力需要를 算出하기 위한 理論的 接近方法과 模型을 기반하여 제시한 文獻과 研究들은 해아릴 수 없이 많다. 또 政府와 各 專門 研究機關들에서 中·長期計劃 및 經濟豫測의 일환으로 產業別, 職種別 人力需給 상황을 推定한 事例도 許多하다. 반면에 教授, 醫師, 農護士 등 이른바 專門職의 需要推定은 業務의 標準化를 통한 需要算出根據의 設定이 어렵기 때문에 對 顧客(client) 比率 등 거시적·개괄적 指標 提示에 그쳐 왔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최근에 병원행정 및 대학행정은 그 規模가 大型화되고 經營合理化의 必要性이 높아짐에 따라 重要한 研究分野로 등장하고 있으며 人力需給의 矛正화는 가장 중요한 研究課題 중에 하나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 大學은 公·私立을 막론하고 獨자적인 財政運營이 보장되므로 教職員의 適正需要를 推定하는 일은 공통적인 關心事が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大學運營의 自律化와 함께 앞으로는 이 分野에 關心이 높아질 것으로 期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研究는 大學教授需要를 推定하는 接近方法을 綜合적으로 정리하고 현행 大學定員 基準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代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研究의 方法은 주로 文獻研究가 中心이 되겠지만 그동안 筆者가 參與하여 수행한 關聯 研究結果들을 재인용하면서 실제 상황을 分析하는 방식을 행하게 될 것이다.

II. 理論的 背景

1. 教授의 役割과 實務

大學教授의 役割은 大學의 目的과 機能에 의하여 設定된다. 大學의 使命은 일 반적으로 知的 文化的 傳承과 發展, 國家社會의 指導的 人材 養成, 現實社會의 改善 等 세 가지로 要約되며, 그와 같은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教授, 研究, 學生指導, 社會奉仕 等의 機能을 擔當한다. 이러한 機能에 따르면 大學教授의 役割은 學問研究者 또는 學者로서의 役割, 學生指導者로서의 役割, 社會奉仕者로서의 役割 等으로 集約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인 期待라고 하겠다.

그러나 教授의 社會的 役割과 그것에 대한 一般的의 期待는 時代의 變化에 따라 달라져 왔다.

學者로서의 傳統的인 教授像是 象牙塔(ivory tower) 속에서 고매한 은둔 생활이나 현실과 담을 쌓고 연구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認識되었다. 이와 같은 認識은 教授들이 비록 世俗的 영화와 거리가 먼 生活을 하면서도 상당한 지부심을 가지고 學問에 精進할 수 있도록 促進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社會가 급격하게 產業化됨에 따라서 象牙塔的 教授像是 도전을 받게 되었다. 즉 產業化 過程에서 캠퍼스 안팎으로 나타난 變革의 要求는 學問의 適應性에 대한 재검토를 要求하게 되었고, 따라서 實踐的 價値를 중요시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Whitehead가 말한 바와 같이 該當 學問 分野의 知識이 무기력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결국 教授의 役割과 機能은 크게 네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즉 ① 學生들에게 專門的 知識과 技術을 전달하는 教育者로서 ② 專門的 學術을 研究하는 學者로서 ③ 學生들의 人格形成에 관한 指導者로서 ④ 現實社會問題의 解決과 社會改造에 參與하는 社會奉仕者로서의 役割이 그것이다.

첫번째, 教育者로서의 役割은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機能이다. 教授·學習活動을 통해 심오한 知識과 技術을 傳授시킴으

로써 文化의 繼承과 創達, 그리고 技術과 產業의 發展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教授의 役割이 學習活動의 內容과 水準에 미치는 영향은 두가지로 나타난다. 우선 授業의 計劃·實施·評價·結果의 피드백 等에 관한 意思決定의 주도적이며 직접적인 대리자가 教授이기 때문에 그들의 資質과 役割이 곧 學習效果와 質을 決定하는 주요 變數가 되는 것이며, 다음으로 교수가 지닌 知的·情意的 特性들은 곧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學習의 效果 내지 教育의 成果로 연결된다.

두번째, 教授의 役割로 學術研究活動을 지적 할 수 있다. 教授는 학생들에게 知識과 技術을 가르치고 指導的 人格을 函養하는 과정에서 關聯研究를 基礎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國家 社會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참가하는 등 社會奉仕活動을 함에 있어서도 專門的 學術研究를 토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研究活動은 教授生活의前提가 되는 中核活動이다. 이는 教授가 學問의 研究者 또는 學者로서의 역할 기대에 부응하는 活動이라 하겠다. 대체로 教授의 研究結果는 學生들의 講義는 물론 科學技術의 發展, 學問의 高度化, 政策樹立에 필요한 基礎資料의 提供 等 다양하게 활용된다. 또 1 教授의 能力を 評價하기 위한 實績審查用 資料로서도 研究論文이 活用되고 있다. 즉 教授의 任用이나 昇進을 決定할 때 重要한 資料로 反映된다.

셋째로, 學生指導의 役割이다. 사실 教授는 本質의으로 學者인 동시에 人格指導者로서의 使命을 지니고 있다. 教育者로서 學生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학습시키는 책임 이외에도 健全한 價值觀·態度 및 指導的 人格을 函養시키는 任務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學生分擔指導는 教授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教授는 學生들의 다양한 問題와 必要 및 欲求 等을 다루어야 할 뿐 아니라 社會의 秩序와 大學의 規律도 確立해야 하는 二重의 役割遂行에서 오는 모순과 갈등도 적지 않다.

넷째로, 教授는 또한 社會奉仕者로서의 役割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이 역할은 分野와 個人에 따라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영역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教育者로서의 역할 자체가 결국은 國家社會를 위한 未來의 役軍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社會奉仕者로서의 役割의 一端을 이미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教授는 보다 직접적으로 專門的 識見을 가진 資源人士로서 지역사

호나 국가사회의當面課題를 해결하고 發展을 위한活動에 참여할 것이 기다린다. 이처럼 現實社會의 發展과 改造를 위하여 보다 직접적인 關心과 參與를 하는 社會奉仕活動은 오늘날 교수에게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로 浮刻되고 있다. 그러나 參與方式에 따라 이 역할은 政治·社會的問題를 학원내에 풀어들일 通路가 될 위험성도 있으며, 真理를 探求하는 教授像을 複雜시키는結果도 가져올 수 있다. 教授 자신도 學生이나 주위로부터의 誤解을 의식하여 社會奉仕活動을 自制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實的으로 社會奉仕者로서의 役割을 수행하는 教授가 많으며 이에 消費되는 時間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負擔이 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2. 教授需要의 概念과 關聯要因

통상적으로 定員이라 함은 法規에 의해서策定된 한 機關이나 組織 또는 部署別 人員配置의 上限線(ceiling)을 말한다. 그러나 定員의 本質은 組織의 目標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適正人力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人力管理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組織의 業務量과 業務의 성질에 비추어 適正한 規模의 人力을 確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

國·公立이나 私立을 막론하고 大學(校)에 있어서 人件費는 至大한 비중을 차하고 있기 때문에合理的인 人力管理는 豫算節約이나 運營의 效率性提高를 위해 절대적인 要件이 된다. 人力管理의 궁극적인 目的是 量과 質의兩側面에서 適正人力을 확보하여 최대한의 能力を 발휘케 함으로써 人件費 및 附帶經費를 節減하고 業務量을 適正化·平準化함으로써 遊休人力을 제거하고 勤務意欲(士氣)를 높이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大學教授의 機能과 役割은 점차 확대·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大學教育은 물론 社會發展의 중요한 變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資質을 갖춘 適正數의 教授人力을 確保하고 業務量을 적절히 調節하는 것은 大學運營의 效率性을 확보함과 동시에 大學教育의 質을 높이고 나아가서 社會發展에 기여하는 要因이 될 것이다.

教授의 人力管理에 있어서 核心이 되는 것은 먼저 機關別 또는 部署別로

1) 金信福, “敎職員 定員 및 人事管理”, 「大學行政管理의 理論과 實際」(서울: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4), p. 98.

所要되는 適正人力, 즉 定員을 策定하는 일이다. 定員만큼 教授를 확보하고 適材適所에 배치하여 業務負擔을 조정하는 일은 그 다음의 과제이며, 특히 教受職의 경우에는 配置上의 재량이나 轉補가 거의 없기 때문에 定員策定문제가 절대적인 比重을 차지한다.

大學(校)에 있어서 教授需要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로, 가장決定的인 要因은 學生數이다. 教授需要의 適正規模는 一般的으로 學生數와 比例해서 增減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教授들이遂行해야 할 業務量이다. 이는遂行해야 할 業務의 절대구모를 말하며 개념상으로는 이를 1人當 勤務負擔(workload)으로 除하면 人의需要가 算出된다. 教授가遂行해야 할 役割은 다양하며 따라서 業務量도複合的인 要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教授들의 勤務負擔 및 業務量을 決定하는 要因 내지 構成要素들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셋째로, 管理(運營)方式 역시 至大한 영향을 미친다. 大學(校) 運營過程에서의 여러 가지 方針들을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講座의 開設 정도, 講座當學生數의 편성, 時間講師에 대한 依存程度에 따라 教授需要는 현저하게 달라진다.

넷째로, 각 大學(校) 내지 政府의 財政 형편은 供給을決定하는 要因임과 동시에 需要에도 영향을 미친다. 教授數는 人件費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財政 형편이 가장 큰 制約要件이 된다. 따라서 財政 형편은 大學의 管理(運營)方式을決定하는 데決定的인 考慮要因이 될 뿐 아니라 教授·學習活動에 대한 지원을 통해 教授의 勤務負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教授 勤務負擔에 關한 理論과 研究

大學教授의遂行責務에 관한 研究는 단적으로 표현해서 教授人力資源의 效率的인 활용을 통하여 大學의 質的인 運營의 效率性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서 基本的인 價值를 찾을 수 있다. 즉, 大學의 效率的인 使命成就를 위하여 教授들이遂行하고 있는 諸般 責務를 총체적으로 測定하여 大學運營上의 經濟的인 合理化와 質的인 發展을 동시에 기하고자 하는 데 기본목적이 있

는 것이다.

大學教授의 遂行責務 策定의 適正化는 특히 지금까지 무질서하고 不均衡 상태에 놓여 있던 大學教授들의 責務를 보다 분명히 할 必要가 있다는 데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個個教授들의 責務의 適正化를 통하여 學科 單位 또는 大學全體 教授들의 責務를 適正化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곧 個個教授들로 하여금 自身의 責務에 대한 認識을 提高하고 再認識시킴으로써 全體的인 大學教育의 質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利點은 大學의 充員必要(staffing needs)를 보다 科學的으로 推定함으로써 大學의 人力需給計劃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합정된 전체豫算 속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教授들의 봉급을 合理的으로 策定할 수 있는 적절한 準據를 제시함으로써 大學財政의 效率적인 編成과 運營을 기한다는 점에서도 大學教授 遂行責務의 適正化 研究의 必要性은 매우 크다.

1973年 金蘭洙 等은 大學教員의 適正 業務負擔量 策定上의 한 가지 예사적 解決方案으로 “大學教員의 役割에 있어서 教育과 研究를 主要基準으로 하여 教育 2, 研究 2, 學生指導 1, 行政管理 1, 社會奉仕 1의 比率로 그 業務負擔量을 算定하되, 全體負擔 限界量을 3으로 함이 좋을 것이다”²⁾라고 提言하였다. 이러한 提案이 있은 후, 1975年 池應業은 教授責務를 時間으로換算하여 教授마다 各己의 強點을 달리 策定한 百分率을 算出할 것을 전의하였다.³⁾ 이어 다음해인 1976年 西江大學校의 N.J. Tracy는 專任教員數의 基準設定은 各學科의 平均的인 學級規模를 기초로 한 各 學科의 週當 講義時間數에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各 學科의 週當 講義時間數에 대한 專任教員 擔當比率이 60% 以下일 때는 새로운 專任教員의 確保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每學期當 설치되는 科目的 多樣性 및 學級規模에 대한 고려를 주장하였다.⁴⁾ 1977年에는 延世大學校의 崔正薰·李學柱가 大學 專任教員의 業務負擔을 講義活動을 中心으로 할 때와 講義外 活動을 中心으로 할 때

- 1) 金蘭洙 外, 「韓國高等教育改革의 方向模索」(서울: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1973), pp. 26-27.
- 2) 池應業, “實驗大學 效率化를 위한 Faculty Load에 관한 研究”, 「實驗大學 研究報告書(1975年)」(서울: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1976), pp. 405-409.
- 3) Nobert J. Tracy, “學科別 專任教員數의 基準設定에 관한 考察”, 「實驗大學研究報告書(1976年度)」(서울: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1977), pp. 187-197.

의 두 가지로 나누어 大學教授 業務負擔 適正量의 推定方案을 提示하였다. 특히 이들은 專任教員의 擔當講義 水準別 負擔量 策定을 위한 試案을 마련 하여 제시하였다.⁵⁾

이상의 先行研究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金蘭洙 等은 우리나라 4年制 大學教授 1,000명에 대한 業務負擔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基準學點時間分」에 의한 違行責務 策定方式을 제안하고 있다. 즉 講義, 相談·指導, 論文指導, 研究開發, 行政業務, 諮問奉仕의 여섯 가지 責務를 종합해서 각각 學點時間分으로 환산하여 14~15學點 時間分 수준으로 適正化시키도록 提案하고 있는 것이다.⁶⁾

美國의 경우 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WICHE)에서는 1970年代에 들어와서 大學教授 違行責務에 관한 세 가지의 중요한 研究事業을 支援하였다. 1971年 L.C. Romney를 中心으로 教授活動分析 特別委員會의 諸般活動 結果를 分析 提示하였으며 1973年 C.W. Manning 等이 教授活動을 分析하고 그 資料를 活用하기 위한 研究들을 支援한 것이다.⁷⁾

1971年 A.C. Lorents는 1924年 C.O. Davis의 研究以來 美國에서 違行된 研究들에서 나타난 大學教授의 違行責務를 綜合하여 크게 일곱 가지로 分類하였다. ① 教授(講義) ② 個別研究指導 ③ 研究 ④ 公共奉仕 ⑤ 學科內 行政業務 ⑥ 學生支援業務 ⑦ 專門的 發展에 관계된 活動의 일곱 가지이다.

한편, 1974年 H.F. Yuker는 教授의 違行責務를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分類하고 있다.⁸⁾ 첫째, 講義業務로서 여기에는 實際授業時間 뿐만 아니라 講義準備와 學生들에 대한 評價도 포함해야 한다. 둘째는, 學生과의 相互作

!) 崔正薰·李學柱, “大學教員 定員策定基準에 관한 研究”, 「實驗大學研究報告書 (1977년도)」(서울: 文教部 教育政策審議會, 1978), pp. 281-304,

!) 金蘭洙 外, “韓國 大學教授 業務負擔의 適正化 研究”, 「延世論叢」제19집(1982), pp. 93-127.

;) C.W. Manning and L.C. Romney, *Faculty Activity Analysis: Procedures Manual*(Boulder, Colo: 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 1973); C.W. Manning, *Faculty Activity Analysis: Interpretation and Uses of Data*(Boulder, Colo.: Western Interstatate Commision for Higher Education, 1974)

{) Harold F. Yuker, *Faculty Workload*, ERIC/Higer Education Report No. 6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1974), pp. 16-23.

用活動으로서 학생지도에 관련된 모든業務이다. 그는 學生指導의 중요성을 새세워서, 특히 이를 別項으로 나타냈다. 세째는, 研究 및 創作活動으로서 모든 學術的인 生產活動을 포함한다. 네째는, 專門開發(professional development)活動으로서 各種 學術會議 參席, 讀書, 研修活動 等이다. 다섯째는, 學校當局에 대한 奉仕로서 校內 各種委員으로서의 活動, 行政業務(學長, 科長, 幹事 等), 學生奉仕活動(推薦書 작성, 職場 알선 等) 等이 여기에 속한다. 여섯째는, 公共奉仕로서 이는 學校 밖에서의 諮問 또는 專門活動을 포함한다. 끝으로 일곱째는, 個人的인 活動이다. 이는 教授로서의 專門職遂行에 관련된 個人的 活動으로서, 예컨대 學父母가 찾아와 만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국의 大學教授들이 현재 실제로遂行하고 있는 責務를 推定한다고 할 때, 大學마다 差異는 있겠으나 앞에서 제시한 教授遂行責務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研究結果들을 綜合해보니 본다면 大學教授들의 基本的이고 必須的인 遂行責務의 領域은 대체로 다음의 여섯 가지로 集約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學部 및 大學院生의 學點을 부여하는 講義負擔
- ② 學生의 個人 및 集團 相談・指導
- ③ 各種 學位論文作成, 個人研究 指導
- ④ 各種 研究遂行 및 授業資料 開發
- ⑤ 大學內 行政補職 및 委員會 活動
- ⑥ 大學外의 各種 諮問奉仕 活動

1. 教授需要 算出의 接近方法

1) 概括的 算出方式：教授 對 學生比 基準

教授需要를 算出하는 가장 간단한 方式은 教授 1人當 學生數 比率을 設定하여 總學生數로부터 나누어 總教授需要를 계산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考慮되는 변수가 단순하여 계산이 간편하다는 長點이 있으며 公私立別, 地域別 學問系列別, 學校別로 比率을 별도로 分析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教授 對 學生 比率은 大學의 教育與件을 나타내는 중요한 指標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概括的인 教授需要 파악을 위해서는 이러한 比率을

適用하여 算出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國家次元의 長期 教育計劃 樹立에서 흔히 활용하는 方式처럼 先進外國의 事例들을 參照하면서 「教授對學生比率」의 장래 目標를 設定한다면 教授需要의 바람직한 水準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教授需要 算出을 위한 概括的인 模型으로 使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教授對學生比率 속에는 어려가지 變數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學問系列別로 適正比率을 설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다시 말하면 總講義時間數, 教授當講義擔當時數, 講座規模, 時間講師에 대한 依存度 等諸般 變數들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適正水準을 判斷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大學別, 系列別 教授 1人當學生數의 推移와 現況에 관한 國內外 資料들을 比較함으로써 向後의 改善目標를 設定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比較일 뿐 實제 教育課程 運營에 필요한 正確한 教授需要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좀더 여러 가지 變因들을勘案한 算出方式의 開發・適用이 요청되는 것이다.

2) 教育課程 運營基準方式

教育課程 運營의 側面에서 教授需要를 產出하기 위한 基本的인 接近方法은 週當 開設되는 總授業時間에 비추어 專任教授가 몇 사람이 必要한지를 產出해 내는 方式이다. 여기에는 履修學點數와 開設講座數, 講義와 實驗間의 比率, 教授의 週當 講義責任時間數, 講座規模 等의 變因이 考慮되어야 한다.

履修時間數는 實驗大學體制下에서 卒業에 必要한 學點이 140學點으로 规定되어 있으나 週當 履修時間數는 專攻系列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資料는 각 大學(校)의 學科別 教科課程 및 實際 編成時間表를 分析하여 比較的 正確하게 算出할 수 있을 것이다.

學部의 경우에는 規程上의 履修時間數와 實際로 開設된 講座의 授業時間數가 一致하지 않는다. 受講人員이 많아 分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總授業時間數에는 分班에 따른 開設講座의 증가가勘案되어야 한다.

다음에 授業時間數에는 講義時間뿐 아니라 實驗時間도 包含된다. 보통 각 大學에서는 講義는 1時間에 1學點을 주는 反面에 實驗은 2時間에 1學點을 주고 있다. 그러나 藝體能系 學科나 醫學系 學科는 이러한 原則에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教授需要를 算出함에 있어서는 教授들의 週當 授業責任時間이 講義를 基準으로 策定되어 있기 때문에 學點計算方式을 適用하는 것이 더 合理的이다. 教育法 施行令 第108條에 依하면 大學教授의 講義責任時間은 週當 9時間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大學에 따라서는 內規로 責任時間은 10時間으로 規定한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總教授需要를 算出하려면 週當 開設되는 講座의 總學點數를 教授의 責任時間으로 除하여 算出하는 것이 간편할 것이다.

이어서 算出되는 總教授需要는 時間講師들이 담당하는 部分까지를 包含한 것이다. 總講座時間 중에서 時間講師들에게 어느 정도 依存하느냐 하는 比率는 大學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學問分野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一般的인 平均值는 總講座時間數의 約 30%를 時間講師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集計되고 있으나 具體的인 基準值는 大學의 類型別, 系列別로 달리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時間講師에 대한 依存率을 除外하면 純教授所要를 算出할 수 있게 된다.

3) 職務分析方式

講座基準方式은 現行 教育法이나 大學(校) 內規에 의하여 各 教授들이 必須의 으로 遂行하여야 하는 講義時間은 基準으로 하여 教授人力을 推定하는 것이다. 大學 또는 大學院에서 가장 중요한 機能의 하나가 講義이다. 따라서 講義라는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須의 으로 소요되는 教授人力이 있게 되는 이人力이 講座基準方式에서 算出될 수 있다.

職務分析方式은 教授들의 職務를 分析하여 教授需要를 推定하는 것이다. 講座基準方式은 講義에 必要한 必須要員만을 산정한다. 그러나 教授의 職務는 講義만이 아니라 講義에 못지 않게 중요한 새로운 學問의 研究, 學生들의 習文指導 等이 있다. 講座基準方式은 이러한 職務를 고려하지 않는다. 講座基準方式에서는 講義所要時間만으로 教授의 需要를 推定한다. 반면에 이 方式은 教授가 講義職務를 遂行하는 外에 나머지 時間으로 기타 職務를 수행한다는 가정하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이 講義基準方式은 단순한 기준으로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에게 이해되기 쉬운 強點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편 教授의 職務를 단순화시킴에 따라 教授人力需要를 낮추어 推定할 가능성은 지니고 있다. 職務分析方式은 가능한 限 教授의 職務

를 자세히 分析하여 各職務를 수행하는 데 必要한 教授人力 需要를 推定하는 것이다.

教授의 職務를 大別하면 講義, 研究, 學生指導, 行政業務, 社會奉仕 等이 있다.⁹⁾

(1) 講義

講義는 教授가 맡고 있는 責任科目을 研究하여 體系的으로 學生들에게 傳達하는 것을 뜻한다. 이 講義에는 순수한 講義, 實驗·實習의 指導, 實技指導, 세미나 主管 等이 包含된다.

(2) 研究

研究는 教授의 職務 중에서 講義 다음으로 中요한 것으로서, 先進知識을 습득하고 學問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義務가 있는 教授에게는 至大한 意義를 가지는 일이다. 이 研究에는 他人의 研究結果 讀解, 獨自의 研究開發, 新로운 知識의 實用研究, 教授法 및 教材의 開發 等이 包含된다.

(3) 論文指導

학생들의 論文이 점차 충실해지고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概要作成段階로부터 指導教授의 철저한 指導를 받는 것이 一般化되었으며 따라서 教授들의 論文指導 부담은 상당한 業務量을 차지하게 되었다. 學生論文指導는 學士, 碩士, 博士 論文指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보통 전학년에 걸쳐 수행되고 있으나 集中的인 論文指導는 學士의 경우 4學年 때, 碩士의 경우 大學完 2年째, 博士의 경우는 3年째에 이루어진다.

(4) 行政

行政은 教授들의 基本職務라고는 볼 수 없으나, 必然的으로 수반되는 業務, 므로 職務의 하나로써 포함시켜야 한다. 여기에 屬하는 업무로서는 各種 會議, 書類整理, 學生生活指導 等을 들 수 있다.

(5) 社會奉仕

教授는 先進知識을 一般社會에 전달하는 교량적役割을 담당함으로써 社會發展에 寄與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諸般 社會奉仕業務를 무시할 수 없다. 公共機關 및 企業에 대한 諮問, 大衆 對象 講演 等이

9) 裴茂基·朴淳達, 「서울大學校 大學院教授人力 需要推定」(未出版研究報告書, 1983) 참조.

이의 包含된다.

따라서 위의 다섯 가지 職務를 遂行하는 데 必要한 週當 總時間은 구하고 教授들이 제공할 수 있는 週當 總時間を 計算하여 教授數를 算出할 수 있다. 각 教授들이 이러한 職務를 수행하는 데 所要되는 時間을 推定한다는 것은 個人差, 大學의 差異 等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研究에서 이런 推定을 시도하고 있다.

III. 教授人力의 實態 및 定員基準의 妥當性

1. 教授確保狀況

우리나라 四年制 大學(校)들의 平均 教授 對 學生比 推移를 보면 60年代 末부터 70年代初 사이에 약간 改善되는 경향을 보였을 뿐, 계속해서 惡化되는 추세에 있다. 즉 1965年에 教授 1人當 19.3名이던 것이 1970年에는 18.8名으로 약간 改善되었으나 그후 1975年에 20.7名, 1980年에는 27.9名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81學年度부터 卒業定員制를 實施하면서 學生數가 急增한 反面 教授의 確保가 수반되지 못하여 教授 對 學生比는 1985年現在 1:33.3名까지 높아졌다.¹⁰⁾

○ 와같은 教授 1人當 學生數는 주요 先進國에 비하면 교수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아래 表에서 보면 主要 國家들의 教授 1人當 學生數는 대체로 10名 내외의 現況을 보이고 있다. 教授 1人當 學生數가 비교적 많은 美國도 우리보다 약 10名이 적은 24.7名으로 나타났다.

〈表 1〉 主要國의 教授 1人當 學生數

國 名	年 度	教授 1人當 學 生 數	國 名	年 度	教授 1人當 學 生 數
美 國	1981	24.75	日 本	1982	10.76
佛 蘭 西	1975	20.03	韓 國	1982	10.99
羅 逸	1982	9.17		1984	33.27
韓 國	1982	13.21			

出處: UNESCO, *Statistical Yearbook*(1984)

10) 韓國大學教育協議會, 「1985年度 大學機關評價 研究報告書」 참조.

大學의 規模와 設立別에 따른 比較에 의하면, 教授 1人當 學生數의 경우
는 綜合大學과 單科大學 모두 國立大學의 教授負擔 與件이 私立大學보다 양
호하였다. 國立大學은 私立大學보다 1人當 學生數에 있어서 10餘名 以上이
고 은 것으로 나타났다. 教育大學의 教授 1人當 學生數는 25.51名, 神學大學
도 25.51名이었다. 한편 教授 1人當 助教의 數에 있어서는 종합대학과 단과
대학 모두 私立大學이 國立大學보다 多少 良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四年制大學(校)의 專任教授의 法定定員을 基準으로 하였을 때,
教授 1人當 學生數는 約 23名이다. 이에 비하면 教授 1人當 學生數의 대학
는 平均 33.59名은 法定基準보다 約 10名의 學生들이 더 많은 것으로써 教
授의 확보정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專任教授 確保率을 現 專任教授數／法定定員으로 정의하고, 이 指標에 의
해 전국 108個 大學(校)의 전임교수 確保率을 보면 平均 67.9%로 그 충원
율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法定定員의 基準도 실제 改善되어야 할 指標이지만, 이것이 合理的이라고
前提한다고 해도 教授要員의 확보가 2/3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教授·學習의 質을 저하시키는 原因變數로 보아 좋을 것이다. 專任教授 確
保率 面에서 大學 사이의 變散은 11%~240%에 이르고 있어서, 어떤 곳은
11%밖에 확보되지 못한 大學이 있는가 하면 어떤 大學은 240%까지(대개
醫科大學의 경우)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指標의 上向 平準化를
실천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 教授의 勤務負擔

教授活動分析(Faculty Activity Analysis: F.A.A.)은 教授들의 業務量을 測
定하여 報酬策定의 基準을 정하거나, 新規採用의 必要性을 判斷하는 等 大
學의 全般的인 企劃 및 管理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얻기 위해서 實施되는 것
이다. 여기서는 筆者가 1985年에 조사한 教授活動分析 結果를 토대로 우리
나라 大學教授들의 근무부담과 그 내역을 살펴보고자 한다.¹¹⁾ 同 研究에서
教授活動은 日課時間(平日 9~18時, 土曜日 9~13時) 内의 活動만을 對象으

11) 韓國大學教育協議會, 「大學教育施設의 適正基準에 관한 研究」(1985), pp. 57-77
참조.

로 하고 夜間講義나 日課時間 外의 個人的 研究時間은 제외시켰다. 調査對象은 33個 大學(校)을 標本으로 선정하여 總 2,450名의 教授들에게 分析表를 配布하였으며 그 中 約 76%인 1,863部가 회수되어 不誠實한 것을 제외한 1,754部가 處理되었다.

教授들의 일주일 동안의 活動을 크게 ① 授業(講義·實驗·實習)에 관連된 活動 ② 研究에 관連된 活動 ③ 授業, 研究 이외의 活動 ④ 社會奉仕活動 ⑤ 其他活動으로 나누어 각각의 活動을 다시 細分하였다. 즉 授業(講義·實驗·實習)에 관連된 活動을 授業時間, 教材研究 및 評價處理時間, 授業時間外 學習指導時間, 他大學 出講時間 等으로 나누고 研究에 관連된 活動을 特定 프로젝트 研究와 個人學術 研究로, 授業·研究 이외의 活動을 學生指導, 行政業務, 會議參席 等으로 細分하였다. 기타 活動은 日課時間 内에 위에서 提示한 活動에 包含시키기 어려운 活動과 우리가豫想하지 못하였던 活動들을 구체적으로 記入하게 하였다.

教授들의 일주일 동안의 日課時間(約 44時間)構成을 살펴보면 授業에 관連된 活動이 59%, 研究에 관連된 活動이 24%, 學生指導·行政業務 等 授業研 等以外의 活動이 15%, 社會奉仕 및 其他 活動이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教授活動時間은 系列別로 나누어 分析한 것이 〈表 2〉이다. 授業에 관連된 活動은 系列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醫學系, 社會科學系, 教養 및 教職系, 教育(人文)系, 語文學系 等이 標本으로抽出된 全體教授의 平均時間에 비해서 授業에 관連된 活動에 相對的으로 적은 시간을 投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醫學系의 경우 全體 活動時間 中 授業에 관連된 活動은 48%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教授와 痶료를並行하고 있는 醫學系列의 特殊性을 잘 나타내고 있다. 授業에 관連된 活動에 비교적 많은 時間을 投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系列로는 教育(自然)系, 水·海洋系, 工業系, 人文科學系, 教育(藝·體能)系 等이다.

研究와 관連된 活動의 경우에는 醫學系, 教養 및 教職系, 水·海洋系, 藥學系 等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教育(自然)系, 教育(藝·體能)系, 藝·體能系, 社會科學系 等이 相對的으로 적은 時間을 投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表 2〉 系列別 教授活動時間 分析表

系 列	標 本 數	% 授業 研究 ・研 究外					1人當 時間數				
		授業	研究	社會 奉仕	其他	授業	研究	授業 ・研 究外	社會 奉仕	其他	
社會科學系	292	57	22	17	2	26.2	10.1	7.9	0.7	0.7	
語文學系	232	58	25	14	1	2	25.6	10.9	6.3	0.4	0.7
藝·體能系	205	59	22	15	1	3	27.1	10.1	6.9	0.5	1.4
人文科學系	102	61	23	14	1	1	28.7	10.6	6.4	0.4	0.5
教育(人文)系	67	58	24	15	1	2	23.8	10.0	6.3	0.4	0.8
教育(藝·體能)系	15	60	21	17	—	1	27.3	9.4	7.8	0.2	0.6
教養 및 교職系	18	57	29	12	2	—	25.8	13.0	5.3	0.1	0.4
理學系	308	59	24	14	1	2	28.4	11.5	6.8	0.4	0.7
工學系	285	61	23	13	1	1	28.2	10.5	6.2	0.5	0.6
農學系	109	48	32	13	1	5	21.6	14.1	6.0	0.6	2.4
藥學系	83	58	25	14	1	2	27.5	11.7	6.9	0.6	0.8
醫學系	58	58	27	12	1	2	27.4	12.9	5.5	0.5	0.9
教育(自然)系	18	64	21	15	—	—	28.7	9.5	6.7	0.2	0.1
大·海洋系	2	61	27	9	2	—	31.0	14.5	4.5	0.0	—
計	1,794	59	24	15	1	2	26.8	11.0	6.7	0.5	0.9

學生指導·行政業務·會議參席 等을 意味하는 授業·研究 이외 活動의 경 우는 社會科學系를 비롯한 人文·社會科學系列(語文學系, 藝·體能系, 人文科學系, 教育系 等)이 工學系를 비롯한 自然科學系列(理學系, 農林系, 藥學系 等)보다 2~3% 높게 나타나고 있고 社會奉仕 및 其他 活動의 경우는 全系列이 全體教授活動의 2~3%에 머물고 있으며 다만 醫學系의 경우 其他 活動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教授 1人當 授業에 관련된 活動의 時間數를 系列別로 살펴보면 25~31時間 정도를 投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醫學系의 경우는 教授 1人當 21.6時間만을 授業에 관련된 活動에 投入하고 있다. 研究에 관련된 活動의 教授 1人當 時間數는 週當 平均 11時間이며 醫學系가 14.1時間으로 가장 높기 나타나고 있다. 授業·研究 이외의 活動의 경우는 大部分의 教授가 7時間 内外에 그치고 있으나 社會科學系(7.9時間), 教育(藝·體能)系(7.8時間)가 비교적 많은 時間을 투입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大部分의 教授들이 社會奉仕活動에 0.5時間 정도 投入하고 있으며 醫學系를 除外하고는 其他活

動의 1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教授活動 중에서 가장 큰比重을 차지하고 있는(約 60%) 授業에 관련된活動은 다시 校內 授業時間, 教材研究 및 評價處理時間, 授業時間外 學習指導時間, 他大學 出講時間으로 나누어 分析할 수 있다. 여기서 教材研究 및 評價處理에는 教授들의 授業準備, 授業에 관한 研究, 學生들의 授業評價 等이 포함되고, 授業時間外 學習指導에는 學生들의 論文指導, 授業과 관련된面談, 討議 等의 時間이 포함된다.

大學別로 授業에 관련된 活動時間의 比率 및 教授 1人當 時間數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校內 正規授業이 全體 教授들의 授業에 관련된 活動中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大學別・類型別로 특기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教材研究 및 評價處理 時間數가 차지하는 比率은 39% 정도이며 論文指導, 授業과 관련된 面談, 討議 等을 의미하는 授業時間外 學習指導에 投入하는 時間이 14%를 占하고 있다. 他大學 出講時間 比率이 全體 授業에 관련된活動 중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2~3%에 머물고 있다.

大學別 授業關聯 活動中에 教授 1人當 校內 授業時間數를 보면 週當 12.8 時間 정도의 校內授業을 擔當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授業 1人當 教材研究 및 評價處理 時間數는 平均 11.2時間을 차지하고 있어 大部分의 教授들이 하루 두 시간 이상을 投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授業・研究外의 學習指導와 他大學 出講은 全體 教授들의 平均이 각각 3.9 時間, 0.6時間을 차지하고 있으며 大學別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授業과 관련된 活動을 系列別로 제시한 것이 <表 3>이다. 授業과 관련된活動 중에서 校內 正規授業이 차지하는 比率은 人文科學系, 教育(藝・體能)系, 農林系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他 系列에서는 比較的 높게 나타나고 있다.

教材研究 및 評價處理時間의 比率은 人文科學系, 社會科學系, 教育(人文)系가 높게 나타나고, 藝・體能系, 醫學系, 教育(藝・體能)系, 教養 및 教職系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人文社會科學系列의 教授들이 其他 系列의 教授들에 비해서 授業準備 및 研究, 評價處理에 비교적 많은 比率의 時間을 투여 하고 있는 것 같다.

授業時間外 學習指導는 藝・體能系(教育系列 中 藝・體能系 포함)가 단연

〈表 3〉 系列別 授業關聯活動

系 列	標 本 數	時 間 比 率 (%)				教授 1人當 時間					
		授業 (1)	教材 研究 評價 (2)	指導 (3)	小計 (4)	他 大學 (5)	(1)	(2)	(3)	(4)	(5)
社會科學系	292	42	42	14	97	3	11.7	11.7	3.9	27.4	0.8
語文學系	232	44	41	13	97	3	11.9	11.2	3.5	26.6	0.7
藝・動能系	205	52	29	16	96	4	15.2	8.6	4.6	28.4	1.1
人文科學系	102	41	44	13	99	1	12.4	13.2	3.9	29.5	0.4
教育(人文)系	67	43	42	14	98	1	11.4	11.1	3.8	26.3	0.4
教育(藝・體能)系	15	41	36	22	98	2	12.3	10.7	6.5	29.5	0.5
改善 및 教職系	18	51	36	11	98	2	13.3	9.3	2.8	25.4	0.5
聖學系	308	44	42	12	98	2	13.3	12.8	4.0	30.1	0.5
工學系	285	47	38	13	98	2	13.9	11.2	3.8	28.8	0.5
醫學系	109	49	36	13	98	2	11.3	8.3	3.1	22.7	0.4
農林系	83	41	41	15	97	3	12.2	12.3	4.4	28.9	0.8
藝術系	58	47	39	13	99	1	13.3	11.2	3.8	28.3	0.2
教育(自然)系	18	49	37	13	99	1	14.2	10.8	3.6	28.6	0.3
水・海洋系	2	45	45	10	100	—	14.0	14.0	3.0	31.0	—
計	1,794	45	39	14	98	2	12.9	11.2	3.9	28.0	0.6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水・海洋系를 제외한 대부분의 系列이 13~14 %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他大學 出講의 경우도 系列別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藝・體能系를 제외하고는 2% 内外에 그치고 있다.

系列別 授業關聯活動의 教授 1人當 時間을 살펴보면 校內 正規授業에 投入하는 時間數가 많은 系列이 藝・體能系, 教育(自然)系, 水・海洋系, 工學系 等이며, 人文社會科學系列의 教授들은 醫學系를 제외한 自然科學系列의 教授들보다 校內 正規授業에 투입하는 시간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教材研究 및 評價處理 時間數를 보면 藝・體能系(教育系 中 藝・體能系 포함)와 醫學系, 水・海洋系를 제외하고는 10~12時間 정도 投入하고 있으며 다만 人文科學系 教授들의 경우 13.2時間을 투입하고 있어서 다른 系列의 교수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授業時間外의 學習指導의 경우에도 藝・體能系를 제외하고는 3~4時間 内外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他大學 出講도 系列間의 큰 차이 없이 0.5時間 内外에 그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教授의 全體 日課時間 중에서 研究活動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이르고 있다. 標本으로抽出된 1,794名의 教授들은 適當 平均 11時間 정도를 研究에 投入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特定 프로젝트研究는 21%, 個人學術研究가 79%를 차지하고 있다. 系列別로 특정 프로젝트研究와 個人學術研究가 차지하고 있는 比率을 살펴보면 農林系, 藥學系, 理學系, 工學系 等이 特定 프로젝트研究가 차지하는 比率이 상대적으로 높고 語文學系, 教育系, 人文科學系 等은 대부분의 연구가 個人學術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3. 現行基準의 妥當性

大學(校)의 教職員 定員은 學科 단위로 일정수를 확보하도록 法令에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國・公・私立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 教育法 施行令에는 「學科마다 전임강사 以上의 教員을 9人 이상 배치하되 教授와 副教授는 4人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¹²⁾ 大學設置基準令에는 학과당 學生定員 및 學科의 性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¹³⁾

- ① 學科當 學生定員이 160人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2學科까지는 教育法施行令 第45條 1項의 規定에 의하되, 3學科인 경우에는 26人 이상, 4學科인 경우에는 33人 이상, 5學科인 경우에는 39人 이상으로 하고, 5學科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學科마다 5人씩을 더한다.
 - ② 學科當 學生定員이 160人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 1호에 의한 教授定員외에 그 초과하는 40人마다 1人씩을 더한다.
 - ③ 自然科學系 각 학과에 있어서는 4人 이상, 體育 및 藝術系 각 학과에 있어서는 3人 이상, 商業・數學・地理・歷史 기타 이에 準하는 각 학과에 있어서는 2人 이상을 각각 더한다.
- 기밖에 大學設置基準令 第5條에는 醫豫科 等의 教員定員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同令 第6條는 教員定員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1人을 時間講師 3人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第45條 1項

13) 第3~6條

따라서 각 대학(교)의 教授定員은 以上的 法令基準에 따라 어렵지 않게 算出할 수 있다. 이렇게 算出된 定員數에 비추어 各 大學(校)이 확보하고 있는 教授現員數의 比率 즉 教授確保率은 教育與件을 나타내는 중요한 指標의 하나이다. 各 大學(校)의 教授定員確保率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저한 隔差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醫科大學, 神學大學 等은 現員이 定員을 초과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市內의 몇몇 大學校는 教授確保率이 50%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地方의 大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교수확보율의 격차는 각 大學(校)의 재정형편 등이 다른 데서 주로 起因하는 것이지만 定員基準 그 자체도 再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學科別 및 學生定員 規模別로 적용되고 있는 現行基準이 과연 어느 정도 理論的・現實的인 妥當性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現行基準이 안고 있는 問題點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設定된 基準의 根據가 不分明하다는 點이다. 現行基準은 學科當 9人을 배치하되 學科의 數 및 學科當 學生定員이 증가함에 따라 遲減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基準을 설정할 당시에는 그 나름의 理論的 基礎研究나 實驗上의 妥當性 검토가 있었겠지만 제시된 基準만으로는 그 근거를 파악하기 힘들다. 우선 고려되는 變因이 學科數 뿐으로서 지나치게 단순하다. 물론 學科의 標準 學生定員規模를 學年當 40名으로 보고 그것을 초과하면 교수수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 學生數 變因을 약간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절적으로反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教授들이 수행해야 할 業務의 類型이나 勤務負擔 등의 變因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學事政策 또는 學事管理基準의 变경에 따른 條件의 變化가 教授定員 算出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卒業定員制의 폐지에 따른 실제 學生數의 변화, 講座當 學生數의 전반적인 축소방침, 教授의 週當 擔當時間數의 감소경향, 時間講師에 對한 依存度의 低下現象 等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現行 教授確保基準이 設定된 당시와는 이러한 諸側面의 조건들이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根本의in 再檢討가 필요한 時點에 와 있다고 하겠다.

세째로, 現行基準이 學科別로 教授定員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의 素地를 안고 있다. 우선 學科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學問分野 내지 系列

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人文社會系와 自然科學系로 구분하여 劃一的인 基準을 적용하고 있다. 醫藥系에 대해서는 追加定員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체에 있어서 醫學系와 藥學系 사이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들 系列間에는 講座規模나 實驗實習의 比率, 時間講師에 대한 依存度 等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學科別로 教授定員을 策定하고 있는 데서 오는 學科新設競爭과 學科間의 閉鎖性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國立大學(校)의 경우는 學科를 新設하면 자동적으로 教授의 增員이 수반되므로 학과신설경쟁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學科間의 장벽을 조성하는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째로, 教授定員 策定에 있어서 大學院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니. 즉 「學科當 9名의 教授를 배치한다」는 基準에서 學科는 學士課程의 學科만을 가리키며 大學院의 學科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大學院에 專任教授를 두고 있는 곳은 서울大學校의 專門大學院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며 學士課程에 덧붙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一部私立大學(校)의 경우 대학원 講義는 責任時間 속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거니 講師와 비슷한 추가적인 부담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現行 教授要員 속에 대학원의 학과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性向을 助長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IV. 教授需要推定을 위한 模型

1. 基本前提

現行 教授定員基準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거니. 教授定員基準은 大學教育의 充實化를 期하고 大學間에 均衡있는 教育與牛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目的이 있는 만큼 보다 妥當하고 邪正한 基準으로 修正・補完되어야 할 것이며 각 大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먼저 教授需要推定에 있어 기초로 삼아야 할 前提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教育課程을 基準으로 한 接近方法과 模型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理論的 背景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教授需要를 산출하는 데는 教授數 學生比에 의한 巨視的 接近方法과 職務分析에 의한 微視的 接近方法 等 여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前者は 지나치게 概括的이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後者は 理論上으로는 가능하지만 實際로는 技術的 制約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教授의 勤務負擔을 좁은 의미의 教育活動에 국한시켜 教育課程을 충실히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通正規模의 教授數를 定員基準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教授需要 算出模型에서는 教育活動과 관련된 複合的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겠다. 現行 基準에서는 가장 중요한 變因으로 學科數 副次의인 요인으로 學生數가 고려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大學에서의 教授需要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으로는 教育課程의 편성을 비롯하여 講座規模, 教授의 責任講義時間 等 여리가지가 있다. 물론 관련되는 모든 要因들을 模型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지만 核心的 要因들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教授의 定員은 現行처럼 學科別로 책정하기보다는 系列別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定員을 學科別로 책정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들은 妥當生 檢討 부분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거니와 教育課程 운영의 廣域化를 촉진하고 學科間의 장벽을 제거하고 學科新設을 위한 경쟁적인 努力を 止揚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系列別 教授定員의 책정이 바람직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수의 所屬까지도 장기적으로는 系列別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現行 大學施設・設備基準은 系列別 學生數를 토대로 설정되어 있으며 學生定員도 系列別로 책정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教授定員基準 改善을 계기로 하여 定員策定單位를 系列로 하되 總定員의 범위 내에서는 각 大學들이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教授定員策定에 있어서는 당연히 大學院의 教育課程 운영에 필요한 教授需要를 반영해야 한다. 현재의 기준은 學科를 단위로 하면서도 大學院의 학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大學院 教育을 學士課程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교수학보가 필요없다는 認識을 갖게 하고 있다.

大學院에 專任教授를 두도록 義務化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大學院 教育에 필요한 만큼의 教授定員은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데 異論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大學院 課程은 별도로 다루어 適正規模의 教授需要를 산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接近方法과 變數選定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基本的인 接近方法은 週當 開設되는 總授業時間에 비추어 專任教授가 몇 사람이 必要한지를 算出해 내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履修學點數와 開設講座數, 講義와 實驗間의 比率, 教授의 週當 講義責任時間數, 講座規模 等의 變因이 고려되어야 한다.

履修時間數는 實驗大學體制下에서 卒業에 필요한 學點이 140學點으로 規定되어 있으나 週當 履修時間數는 專攻系列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資料는 각 大學(校)의 學科別 教科課程 및 實驗編成 時間表를 分析하면 比較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學部의 경우에는 規程上의 履修時間數와 實際로 開設된 講座의 授業時間數가 一致하지 않는다. 受講人員이 많아 分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總授業時間數에는 分班에 따른 開設講座의 增加가 감안되어야 한다.

다음에 授業時間에는 講義時間뿐 아니라 實驗時間도 포함된다. 보통 各大學에서는 講義는 1時間에 1學點을 주는 反面에 實驗은 2時間에 1學點을 주고 있다. 그러나 藝體能系 學科나 醫學系 學科는 이러한 原則에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施設所有의 경우에는 學點數보다 實제로 空間을 占有하는 講義 및 實驗의 總時間數가 중요하다. 그러나 教授需要를 算出함에 있어서는 教授들의 週當 授業責任時間이 講義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學點計算方式을 적용하는 것이 더合理的이다. 教育法 施行令 第108條에 의하면 大學教授의 講義責任時間은 週當 9時間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大學에 따라서는 內規로 責任時間은 10時間으로 規定한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總教授需要를 算出하려면 週當 開設되는 講座의 總學點數를 教授의 責任時間(學點)으로 除하여 산출하는 것이 간편할 것이다.

여기서 산출되는 總教授需要는 時間講師들이 담당하는 部分까지를 包含한 것이다. 總講座時間 중에서 時間講師들에게 어느정도 依存하느냐 하는 比率

은大學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學問分野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一般的의 平均值는 總講座時間數의 約 30%를 時間講師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集計되고 있으나 具體的의 基準值는 大學의 類型別, 系列別로 달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時間講師에 대한 依存率을 除外하면 純教授所要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

.) 學生數와 週當 受講時間數

敎育課程分析에서 算出되는 週當 總學生受講時間數(Weekly Contact Hours: W.C.H)는 教授所要算出의 出發點이 된다. 이때 週當 總學生受講時間數(W.C.H)는 學生數와 學生 1人當 受講時間數를 乘하여 計算할 수 있으며 최소한 系列別로 細分化되지 않으면 안된다. 週當 履修해야 할 時間數는 系列(더 具 豊의으로는 學科)에 따라 講義와 實驗으로 區分되어 있으므로 특히 學部의 경우에는 週當 總學生受講時間數 역시 講義와 實驗으로 나누어 算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講座規模(class size)

週當 總學生受講時間數를 基礎로 開設해야 할 總講座數를 산출하려면 平均 講座規模가 設定되어야 한다. 실제로 講座規模(class size)는 大單位 講座로부터 小規模 세미나 形態에 이르기까지 그 受講生 規模가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編差를 모두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平均值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實態分析資料를 參照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講座當 受講生數 基準을 學部講義의 경우 人文社會系列은 60~70名, 語文系列과 體育系列 그리고 自然系列는 50名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實驗의 경우는 대체로 講義의 半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大學院의 講座規模는 共히 10名을 기준으로 하였다.

.) 時間講師 依存度

在大學에서 개설해야 하는 總講座時間은 원칙적으로 모두 專任教授들이 담당하는 것이 理想의이지만 현실적으로 全 講座를 전 인교수로 충당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特定한 전공분야는 專任教授가 담당하는 것보다 外部의 專門人士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專任教授 所要를 算出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비율의 時間講師 依存度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뿐 아니라 타당한 측면도 있다.

時間講師에 依存하는 정도를 延人員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專任教授가 適當 담당하는 時間數에 비해서 時間講師는 훨씬 적은 시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時間講師들 중 대부분은 한 사람이 適當 한 講座를 담당하고 있지만 大學에 따라 2~3 講座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時間講師에 대한 依存率은 延人員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전체 開設講座 時間數 중에서 時間講師가 담당하는 時間數의 비중을 比較하는 것이合理的 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外來時間講師에 대한 依存度는 大學(校)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中位值(median)는 대체로 30% 내외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時間講師 依存度는 地域間・大學間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學間系列間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人文大와 師大는 基礎課程과 教養 程度의 많은 講座를 時間講師가 맡고 있으며 音大와 美大에서는 教授對學生의 1對1 實技教育을 時間講師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時間講師 依存度가 가장 높은 系列은 藝・體能系列이며 가장 낮은 系列은 醫藥學系이다.

·) 專任教授의 適當 擔當時時間

專任教授가 適當 講義(實驗包含)를 몇 시간 담당하여야 하는가는 教授所要算出에 있어 중요한 變數가 된다. 適當 開設해야 할 講座時間數가一定하더라도 教授 1人當 擔當時時間數의 증감에 따라 教授所要가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敎授法 施行令에 규정된 大學(校) 專任教授들의 適當 講義責任時間은 9시간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大學(校)에서는 자체규정에 의하여 責任時間은 1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全國 大學(校)에 대한 評價資料에 의하면 專任教授 1人當 適當 平均時間數는 12.2時間으로 集計되었다.

또한 教授들의 適當 수업시간은 學問系列別로도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가장 負擔이 많은 系列은 藝・體能系이며 가장 負擔이 적은 系列은 醫學系이다. 전반적인 경향은 人文・社會系의 교수들이 대체로 12時間 내외의 강의를 담당하는데 自然系 교수들의 경우는 農林系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3시간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自然系 교수들의 경우 實驗實習을 담당하기 때문에 강의책임시간은 같더라도 실제 수업 담당시간은 더 많은 데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教授들의 실제 講義負擔은 대학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教授需要를 신출함에 있어서 이러한 實際負擔(workload)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方式은 아니다. 현상유지적인 최소한의 教授需要를 算出하는 테는 적합할런지 모르지만, 現在의 講義負擔이 결코 적정한 것이 아니라 學生數의 急增과 教授充員의 지연에서 빚어진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改善目標를 적용하는 것이 合理的이기 때문이다.

3. 算出模型과 定員基準

이상에서 살펴 본 教授需要算出의 接近方法과 變數들은 구체적인 算出模型으로 종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教授定員을 策定하는 基準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算出公式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를 돋고 적용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本研究에서 채택한 教授需要 算出의 基本模型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text{専任教授數} = \frac{\text{學生數} \times \text{週當受講時間數}}{\text{講座當學生數}} \times \frac{\text{専任教授依存度}}{\text{教授當週授業時間數}}$$

이러한 基本模型에 따라 특정한 學生數 규모의 大學(校)이 필요로 하는 教授數를 어렵지 않게 算出할 수 있다. 예컨대 學生數 3,000名 규모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週當 受講時間數가 20時間, 講座當 學生數가 30名으로 간주하고 専任教授가 全體時間의 70%를 담당하고 教授의 週當 責任時間은 10시간으로設定한다면 教授需要는 다음과 같이 算出된다.

$$\text{専任教授數} = \frac{3,000 \times 20}{30} \times \frac{0.7}{10} = \frac{42,000}{300} = 140$$

이와같은 基本模型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系列別로 세분해서 각 系列別의 教授需要를 算出하여 合算할 수 있을 것이며 受講時間 및 講座當 學生數는 學部와 大學院, 實驗과 講義로 구분해서 기준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系列別 教授需要算出模型은 다음과 같이 提示된다.

$$\text{系列別具體模型 } P = \frac{\left(\frac{S_U \cdot W_L}{C_{UL}} + \frac{S_U \cdot W_E}{C_{UE}} \right) \times F_U + \left(\frac{S_g \cdot W_g}{C_g} \right) \times F_g}{t}$$

P =専任教授所要, S =學生數, W =週當 學生受講時間數
 C =강좌당 學生數, F =専任教授依存度, t =교수당 遷授業時間數
添字: U =學部 g =大學院 L =實驗 E =講義

上記 模型은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위에서 제시한 基本模型과 같은 성격의 것이며 각 系列에 따라 關聯變因들의 값을 달리 책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산출된 系列別 教授需要는 合算되어 大學別 總教授需要(*TP*)가 계산된다.

$$TP = \sum_{i=1}^n P_i$$

이러한 模型들은 그 자체를 教授定員算出의 基準 내지 公式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포함된 變數들의 값은 현황분석에서 파악된 값을 약간 上向調整하여 책정하거나 理論的・當爲的인 수준을 설정할 수도 있다.

變數들의 값은 각 대학들의 教授確保狀況이 개선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조정하여 定期的으로 修正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本 模型의 長點 중의 하나로 기도 하다. 각 대학(교)의 教授定員은 행정당국에서 總定員의 충족여부 만족 점검 내지 評價하더라도 관련 變因들의 標準値를 제시해 줌으로써 教育課程 운영의 準據로 삼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 역시 本 模型의 長點에 속한다.

但現 現行 基準에서는 대규모 大學일수록 教授定員이 체감하는 데 비해서 本 模型 내지 定員基準에서는 學生數에 비례해서 教授定員이 늘어난다는 단점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系列別 特殊性을 반영하면서 教養系列을 별도로 설정하든지 하는 方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學生規模가 클수록 教授數를 적게 確保해도 무방한 현재의 基準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再檢討해 볼 만하다.

V. 結語

大學教授 需要의 推定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要因들이 관련되고 推定을 위한 接近方法도 多樣하다. 지금까지 大學教授의 確保에 관한 適正基準을 설정하고 그 需要를 算出함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概括的이고 단순한 方式에 依存하였으며 우리의 大學運營 風土 역시 과학적인 教職員 人力需求 관리에 소홀하였음을 否認할 수 없다. 앞으로는 教授의 定員基準 자체

느. 터 현재처럼 法令으로 統制하는 성격을 止揚하고 장기적으로는 各 大學들

- 自律的인 評價基準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發展되어야 한다고 볼 때 當事者들이 납득할 수 있는 妥當한 근거를 가진 基準의 提示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 論文에서는 비교적 여러 變因들을 고려한 教授需要의 推定模型과 구체적인 算出節次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는 바, 객관적이고 설득력있는 教授定員 基準을 設定하는 데 참고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各 大學들이 關聯要因 들의 與件을 개선하는 데 자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